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 가 과 학 기 술 자 문 회 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일부개정(시행 2021.10.21., 법률 제18071호, 2021.04.20.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사항 중 운영위원회 위임 안건 및 법에 규정된 특별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를 고려한 한시적 운영원칙, 위원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가 법에 상향 규정 됨에 따라 회의록을 갖춰야 한다는 기존 내용 삭제(제7조제8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0항, 제12조제9항)

나. 회의록에 갖춰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3조제2항)

-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부의 안건, 회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등 회의록에 갖춰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사항
중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안건을 규정(안 제8조제9호, 제8조제10호,
제8조제11호, 제8조제19호, 제8조제20호)

라.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에 상항 규정 됨에 따라 기존 내용 삭제
(제9조제1항)

마.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안의 한시적, 집중적 논
의를 위한 기구임을 규정(안 제10조제1항)

바. 특별위원회에서 공동 위원장을 위촉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1인으로
명시한 내용 삭제(안 제10조제2항)

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에서 공동 위원장을
위촉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1인으로 명시한 내용 삭제(안 제11조제1
항, 제12조제1항)

아.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위임 규정 변경(안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 합의 전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1. 4. 20. ~ 10. 20.)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0항, 제12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조제7항 및 제7조제6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부의안건
4. 회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9호부터 제2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종전 같은 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한다.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

도 개선안 마련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점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한대상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 제2항) 중 “각 전문위원회”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중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 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로, “위원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위원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② <u>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u>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② 법 제5조 제7항 및 제7조제6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부의안건 4. 회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u>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u>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 제>
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1. ~ 8. (생략) <신 설> <신 설>	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신 설> 9. ~ 15. (생 략) <신 설> <신 설> 16. ~ 18. (생 략)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12. ~ 18. (현행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한대상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1. ~ 23.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u>①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u>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 제> <u>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각</u>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⑥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

②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삭제>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

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u>위원장 1명</u>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u>위원장</u>----- ----- -----.
⑩ <u>지방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u> 제12조(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u>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⑨ <u>기초연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u>	<삭 제> 제12조(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법 제7조제5항</u>----- ----- -----<u>위원장</u>----- ----- -----.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 락 처	044-202-6746